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9-9
----------	------

제출년월일 : 2019. 1. 1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폐지사유

본 조례는 마포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제정하였으나, 2015년 2월 12일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된 바,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8. 12. 13. ~ 2019. 1. 2.(제출 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자율평가(감사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정복지과) : 해당사항 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9. 1.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폐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조례 폐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자치행정과 양선아
연락처	02-3153-8323